

1. 개정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0.3.31.)되고, 시행('20.7.1.)이 예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

또한, 시행규칙이 '94년 제정된 이후 5차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조문체계가 복잡해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불공정조달행위 시정 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신설(안 제11조)

시행령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조달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조달청장에 제출할 신청서의 양식 등 필요 자료 규정

나. 법 체계 정비

1) 현행 14개 조문에 1개 조문 신설, 2개 조문은 삭제 등으로 13개 조문으로 변경

2) 시행령으로 상향된 수요기관 범위에 관한 고시의무(현행 제2조)를 삭제하고, 공사대금 지급(현행 제12조)시 필요서류를 공사계약의 사후관리(현행 제12조) 조문 내로 통합하였음

3) 법률,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 본문과 별표에 중복표기되어 있는 문구를 간결하게 정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조달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25. ~ 8.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요물자의 구매절차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납품요구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달요청서를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를 계약상대자 및 조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공급받았을 때

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구매·공급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①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이하 “외국산제품등”이라 한다)의 구매·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자조달요청서를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외국산제품등을 구매·공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물자공급 통지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물자를 지정된 인수기간에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후의 보관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의 계약절차) ①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계약 요청서를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계약체결 통지서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에 관한 업무 등의 지원 또는 대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의 개요, 공사 계약서류, 그 밖에 해당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지원 또는 대행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 위임) ① 영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 또는 공사로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
2. 신규개발품의 조달이나 납품기일 촉박 등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위임을 요청한 경우
3. 수요물자 또는 공사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 또는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단가·수요시기 및 직접구매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집행 계획서의 제출)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사집행 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입찰서의 기술검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품질 및 성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수요물자의 입찰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사계약의 사후관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까지 착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착공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사의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계약내용 변경요청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변경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준공통지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하거나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대보증인이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이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계약 해제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연체료 부과기준)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연체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

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1조(이의제기)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하려는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비축물자의 판매절차)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배정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배정받은 수요자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해진 납입시기에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비축물자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영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의 금액은 비축물자 판매대금과 그 금액에 대한 비축물자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판매대금 지급일까지의 약정이

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수요자가 비축물자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축물자 인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대금납부)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

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11 –